

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3월 10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설치·운영중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. 6. 30. 만료 예정에 따라,
- 나. 청소년 사업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 사업운영 및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에게 최초 위기개입 상담서비스에서부터 자립·자활까지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사업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
-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,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
-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, 거리상담 등 청소년일시쉼터사업
- 위기청소년 등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대안교육 사업
- 직업,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립지원
-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활동 등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
-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모델 정립사업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
- 시설규모 : 대지 22,650㎡, 건물면적 6,462㎡(지하1층, 지상4-5층)
- 주요시설 : 상담실, 집단상담실, 댄스연습실, 음악연습실, 청소년 일시쉼터, 청소년성문화센터, 이룸학교, 꿈에학교 등
- 위치도



라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2. 7. 1. ~ 2025. 6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모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2,572백만원('22년) ※ 민간위탁사업비 606백만원 별도
- 산출근거
 - 인건비 1,717백만원, 운영비 563백만원, 사업비 292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: 적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 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--|
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
- | |
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 |
|--|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감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|
|---|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- | |
|--|
| <p>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|
|--|

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상담팀 이승연 (☎ 2133-4133)